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99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임이자·지성호·박성민

박대수 • 이 용 • 김형동

정희용 • 이종성 • 서일준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도지사뿐만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20년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토지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이 발견됨.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알리고

있으나, 홍수 등 물 재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안 제7조의2)
-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안 제25 조제2항)
-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안 제27조의2)
- 4)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안 제59조 제2항)
- 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 변경 폐지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개별 통보(안 제10조)

- 다.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1)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규정에 명시(안 제1조, 제3조)
 - 2) 하천정보체계 구축 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안 제22조)
 - 3)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안 제25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를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및"으로 한 다.

제2조제5호 중 "높이기"를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로,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천에 대한"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이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1.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하천
-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신속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송달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을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 및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하여 사전에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이하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① 국가지원 지방 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국가지원지방하천의 유지 · 보수는 시 · 도지사가 시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3조(하천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대하여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제1조(목적)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 수생태환경을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및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 정 · 관리 ·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 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5.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 --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 • 회복하기 -----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 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 고,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이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 고 -----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

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④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 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 보 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 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 1.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하천
-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신속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 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현행과 같음)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저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 저 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 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 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

고시하고, 그 내용을 「행정절
차법」 송달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⑤·⑥ (현행과 같음)
세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세25조(하천기본계획) ①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
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관리 취약성 대응
<u> </u>
·

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신 설>

<u>이 경우 하천의 치수</u>
·이수·수생태환경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 및 문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u>대하</u>
여 사전에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u>다만,</u>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이
하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
사 및 유지·보수) ① 국가지
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지방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
<u>다.</u>

(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생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